중소벤처기업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<전매체> 9. 28(수) 10:00	-

담당 부서	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	책임자	과 장	정의경 (044-204-7821)
		담당자	서기관	이호중 (044-204-7826)
			사무관	정지혜 (044-204-7294)

「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」 65만개사, 8.9천억원 지급

- 27일(화)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'2022년 2분기 지급계획(안)' 의결 -

□ '22.2분기 **손실보상금**으로 **65만개사**에 **8.9천억원** (잠정) 지급

◦ 영업이익 감소분 **100% 보상, 하한액 100만원**

□ 신속보상의 경우 **9월 29일(목)** 오전 9시부터 **온라인**으로 간편하게 **신청 가능**하며, **첫 5일간** (9.29~10.3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**5부제 실시**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27일(화),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(위원장 :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, 이하 심의위원회)를 개최해 '**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(안)**'을 **의결**하고 **9월 29일(목)**부터 **온라인 신청** 접수를 **시작**한다고 밝혔다.

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

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약 **65만개사**에 **8.9천억원**을 지급할 예정이다.

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**영업시간 제한, 시설 인원 제한 조치**를 이행한 **소상공인·소기업** 및 **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** 중 **매출이 감소**한 **65만개사**이다.

이·미용시설, 일반 학원 등에 대한 **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**된 점, **짧은 방역기간**(17일)이 반영된 결과 전체 **보상대상**은 이전 분기에 비해 **다소 감소**했다.

보상규모는 **8.9천억원**으로 추정된다.

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**보정률은 100%**로 하여 **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**하고, **짧은 방역기간** (17일)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**손실규모**가 **전반적으로 감소**하였음에도 불구하고 **하한액도 100만원**으로 **유지**해 **최대한 두텁게 지원**하기 위해 노력했다.

또한, 4월 18일 이후 **방역조치 해제**로 인한 **매출 증가**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**산정방식**도 **조정**했다.

2.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

※ 신속보상의 **대상**과 **금액**은 확인요청·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**변경 가능**

신속보상은 국세청·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**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**, 별도 **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**하는 방식이다.

2022년 2분기 **신속보상 규모**는 **57.4만개사, 7.7천억원**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(64.9만개사)의 **88%**, 전체 보상금액(8.9천억원)의 **87%**이다.

신속보상 규모가 약 **90%**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·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**보상금 산식을 간소화**한 결과이다.

다만, **2021년 3분기~2022년 1분기** 손실보상금 **정산 대상자**로서 **이전 분기** 보상을 **미신청**하였거나 **보상절차가 진행 중**인 사업체 **7.4천개사**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**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**에 2022년 **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**할 수 있다.

(1) 업종별 보상내용

※ 신속보상 대상(57.4만개사) 중 금액이 확정된 56.6만개사 기준이며, 이하 같음

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**식당·카페**가 **45.9만개사**(81.1%, 5.8천억원)로 가장 많고, **실내체육시설** 4.3만개사(7.6%), **유흥시설** 2.7만개사(4.8%) 순이다.

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**유흥시설**이 **172만원***으로 **가장 높았다.**

* 영업시간 제한이 (1분기) 22~23시 → (2분기) 24시로 변경에 따른 매출 하락 감소 반영

<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>

구 분	식당·카페	실내 체육시설	유흥시설	노래 연습장	PC방·멀티방	기타*	계
신속보상 대상(만개)	45.9	4.3	2.7	2	0.7	1.0	56.6
(비중, %)	(81.1)	(7.6)	(4.8)	(3.5)	(1.2)	(1.8)	(100.0)
신속보상 금액(억원)	5,838	682	464	240	108	248	7,579
(비중, %)	(77.0)	(9.0)	(6.1)	(3.2)	(1.4)	(3.3)	(100.0)
평균 신속보상 금액(만원)	127	159	172	120	154	247	134

* 매출 규모가 큰 영화관·공연장, 결혼식·장례식, 목욕탕 등이 포함

(2)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

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**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**가 **27.9만개사**로,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(56.6만개사)의 **절반 수준**(49.4%)을 차지한다.

연매출 1.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.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.5% 수준이다.

< 사업체 규모(연매출)별 신속보상 대상 >

구 분	소기업				중기업	계
	8천만원 미만	8천만원 ~ 1억 5천만원	1억 5천만원 ~ 10억원	10억원 이상	10억원 ~ 30억원	
신속보상 대상(만개)	27.9	10.2	17.9	0.3	0.3	56.6
비중(%)	49.4	18.1	31.5	0.5	0.5	100.0

1) **8,000만원** : 간이과세자 기준 / 2) **1.5억원** : 숙박·음식점업의 복식부기 적용 기준
3) **10억원** : 숙박·음식점업의 소기업 기준

(3)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

방역이행일수 축소(최대 17일)로 인해 **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**받는 사업체는 **46.4만개사**(82.0%)이며,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**74.5만원을 추가로 지급**받게 된다.

100만원 초과 ~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.0만개사이며,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.9%에 해당한다.

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.2만개사(2.1%)이다.

3. 신청 및 지급 일정

(1) 신속보상

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.6만개사* 사업체는 **9월 29일(목) 오전 9시**부터 **전용 누리집**(소상공인손실보상.kr)을 통해 **온라인**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.

*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7.4천개사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

9월 29일(목)부터 **첫 5일간**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**5부제**를 운영하며,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.

9월 29일(목)부터 10월 14일(금)까지는 보상금을 **매일 4회* 지급**(주말 및 공휴일 제외)하며, **오후 4시까지 신청**하면 **당일**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.

* ① 00~07시까지 신청 → 당일 10시, ② 07~11시까지 신청 → 당일 14시, ③ 11~16시까지 신청 → 당일 19시, ④ 16~24시까지 신청 →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

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, 전용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**10월 4일(화)**부터 **오프라인** 신청도 **가능**하며, **온·오프라인** 신청 모두 **4일(화)부터 9일(일)까지**(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)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**홀짝제**를 운영한다.

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**사업장 소재지 내** 가까운 **시·군·구청**에 마련된 **손실보상 전용 창구**에 방문하면 된다.

< '22.2분기 신속보상 온·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>

5부제 (온라인)	9.29(목)	9.30(금)	10.1(토)	10.2(일)	10.3(월)
사업자번호 끝자리	4, 9	0, 5	1, 6	2, 7	3, 8

2부제 (온·오프라인)	10.4(화)	10.5(수)	10.6(목)	10.7(금)	10.8(토)	10.9(일)
사업자번호 끝자리	짝수	홀수	짝수	홀수	짝수	홀수

*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

(2) 확인요청, 확인보상, 이의신청

10월 4일(화)부터는 **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**도 가능하다.

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(확인요청),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(확인보상)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(화)부터 **온·오프라인**으로 신청이 가능하다.

온라인 신청은 4일(화)부터 **9일(일)까지 첫 6일간**, **오프라인** 신청은 **주말을 제외**한 4일(화)부터 **7일(금)까지 첫 4일간 홀짝제**로 운영한다.

< '22.2분기 확인요청·확인보상 신청일 현황 >

온라인 신청	10.4(화)	10.5(수)	10.6(목)	10.7(금)	10.8(토)	10.9(일)
사업자번호 끝자리	짝수	홀수	짝수	홀수	짝수	홀수

*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

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**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**에 가능하다.

4. 안내 및 기타사항

9월 29일(목)부터 지방중기청, 전국 시·군·구청,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**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**가 운영된다.

손실보상 **콜센터**(☎1533-3300)와 **온라인 채팅상담**(손실보상114.kr)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.

한편, 중기부는 **2020년 9월 24일**부터 **약 2년여간**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에 따른 **소상공인 피해를 지원**해왔다.

정부는 **역대 최대 규모**(23조원, 371만개사)로 편성된 **손실보전금**을 비롯해 총 **여덟 차례의 재난지원금 54조원**을 지급하며,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**위기상황**을 **해소**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.

또한,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적근거가 마련된 **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**를 통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**3개 분기 동안 6.6조원을 지원**했다.

분기별로 100만개사에 육박하는 손실보상 대상 개별 사업체마다 손실규모를 산정해 **신청 당일 지급**하는 유례없는 제도를 만들었고, **신속하고 효과적인 손실보상**을 위해 노력 중이다.

조주현 차관은 "2022년 2분기 손실보상도 **차질 없이 집행**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**완전한 회복**과 **새로운 도약**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며,

"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**확인보상, 이의신청**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**마무리**하기 위해 **손실보상 심의위원회**는 **지속적으로 노력**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Q&A

1.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주요 특징

① **(보상규모) 64.9만개사**에 **약 8,857억원** 지급(잠정)할 예정

* 사업체 1개당 평균 134만원

② **(방역일수)** 손실보상 대상 정부 방역조치가 4.17일까지 시행됨에 따라, **방역이행일수는 최대 17일**까지만 적용

③ **(하한액) 방역조치 기간이 17일**임에도 불구하고 **하한액**을 '22.1분기와 동일하게 **100만원으로 유지**하여 손실을 충분히 보상

④ **(일평균 매출액)** 방역조치 해제 이후 **소상공인 매출 증가**로 인한 **보상금 과소산정을 방지**하기 위해 **방역조치 적용기간에 한정한 일평균 매출액**을 산정

< '22.1분기 VS '22.2분기 비교 >

구 분		2022년 1분기 손실보상	2022년 2분기 손실보상
보상대상		①집합금지, ②영업시간 제한,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·소기업 및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('21.4분기 중기업 제외)	좌동
방역조치 이행기간		**2022년 1월 1일 ~ 3월 31일**	**2022년 4월 1일 ~ 17일**
보상금 산정 방식	산식	▪ ①일평균 손실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	좌동
	매출액 추정	▪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, 지역·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	좌동 ①다만,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한 경향을 고려한 일평균 매출액 산정 ②매출·비용구조가 변동한 경우, 신규 개업으로 간주하여 변동 이후 과세자료를 적용
	보정률	100% ('21.4분기 90%)	좌동
	상한액	1억원	좌동
	하한액	100만원 ('21.4분기 50만원)	좌동
기타		▪ 손실보상금 정산금액 상계 ▪ 선지급금 잔액 공제	좌동

2. 일평균 매출액 산정방법은?

□ **방역조치 해제** 이후 **소상공인 매출이 증가**하여 월별 보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**산정방식을 개선**

□ 사업체별 **4월 과세인프라자료**와 **지역·시설 평균값**을 활용하여, **방역조치 기간** (4.1 ~ 17일) 의 **일평균 매출** 도출

○ 지역·시설 평균값을 활용하여, **'22년 4월 매출** (과세인프라) 에서 **4.1~17일에 해당하는 비율** 산출 → **개별 사업체** 4월 매출에 적용

* 단, 해당 비율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

3. 2022년 2분기 방역조치 기간이 17일에 불과함에도,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한 이유는?

□ ①그간 **손실보상 대상이 아닌** 피해 소상공인께도 **재난지원금**을 통해 **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***, ②**온전한 손실보상**의 일환으로 **하한액 100만원**을 약속드린 점(인수위), ③**물가·금리 상승**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 어려움 등 종합 고려

* 새희망자금,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도 최소 100만원 이상 지급

** 이전 분기에도, 폐업 등으로 방역조치 기간이 짧더라도 하한액은 동일수준 적용

4. '22.1분기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, '22.2분기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?

□ **'22.1분기** 손실보상금이 **최종 확정**된 이후에 **'22.2분기** 보상금을 제대로 산정 가능

○ '22.1분기 손실보상 결과에 따라, '22.2분기에 공제해야 하는 이전 분기 정산 잔여액이 **달라질 수 있기 때문**

□ 따라서,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이신 경우 반드시 **'22.1분기 손실보상을 먼저 신청**해주시기 바람